

#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 규정

제정	1977. 2. 17
개정	1983. 6. 8
개정	1987. 9. 21
개정	1988. 10. 24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4. 4
개정	2012. 10. 16
개정	2015. 1. 20
개정	2018. 1. 16
개정	2019. 3. 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정하고 부채 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치과의료봉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4. 4)

제2조(상의 명칭과 수여) 본 상의 명칭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이라 칭하며 상 패와 부상으로 수여한다.(개정 2012.10.16)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신설 2015. 1.2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대외 협력이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협회 이사 및 대외협력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자
2. 학계, 개원가, 유관단체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

⑤ 심사위원회는 재직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수상인원) 본상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2015. 1.20, 2019. 3.19)

제5조(수상자격) 수상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1. 12.20, 2015. 1.20, 2018. 1.16)

1.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치의학의 개발연구에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3.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6조(수상후보자선정) 수상후보자 또는 단체의 선정은 지부 추천, 공모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 1.20)

제7조(구비서류)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시상 1개월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0)

1. 공적조서 1통
2.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3.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시상일자 및 장소) 시상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다.(개정 2015. 1.20)

제9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0)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 또는 단체의 최종결정은 협회 이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2015. 1.20)

## 부 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회정관 및 상 수여규정에 의한다.
2. 기타 시상에 관한 제정사항은 본상 제공자와 협의 결정할 수도 있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